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트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드름, 아토피, 트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

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트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항은 총리령 제135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p>